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과 기술규칙

Cataloging Policy and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for Non-book Materials in Korea

조 명 희 (Myeung-Hee Cho)*

목 차

- | | |
|----------------------|-----------------|
| 1. 서 론 | 3.4 형태사항의 기술 |
| 2. 편목의 관리정책과 표준화 | 3.5 표목의 기술 |
| 2.1 편목 관리정책 | 4. 주제분석과 주제의 기술 |
| 2.2 편목의 표준화 | 4.1 주제명 표목 |
| 3. 기술과 표목 | 4.2 매체유형의 구분 |
| 3.1 복합매체자료와 세트자료의 처리 | 4.3 분류번호 |
| 3.2 기술의 정보원 | 4.4 주제분석의 제 문제 |
| 3.3 자료유형의 식별방법 | 5. 결 론 |

초 록

모든 편목절차는 편목정책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일관성있고 발전적인 비도서자료의 편목을 위하여는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의 결정이 우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술편목의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도서자료의 기술편목과 서지통정에 문제가 되는 영역을 조사하고 편목기술규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국내 비도서자료 편목의 표준도구가 될 KORMARC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이 최근 제안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AACR2R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최종 규칙제정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도서자료의 주제접근을 위한 원칙과 도구 및 제 문제점들을 논하였다.

* 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 96. 10. 31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cataloging procedures for non-book materials(NBM), library has to make policy decisions which will apply to all materials. This study explores problem areas in bibliographic control and descriptive cataloging for NBM and issues to be decided in cataloging policy for NBM are presented. Recently proposed KORMARC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NBM is looked into and compared with AACR2R and some problems to be considered for revising are suggested. Principle and tools needed for subject analysis of NBM are discussed and special issues of subject analysis for NBM are presented.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특히 80년대 이후 많은 새로운 매체들이 개발되어 도서관의 장서로 입수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 개발된 CD-ROM이 90년대 중반인 현재 국내의 많은 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매체가 된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70년대에 등장한 비디오텍스는 레이저디스크로, 최근에는 디지털비디오텍스(DVD)로 기술개발되었으며, 이것이 도서관에 유입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이 앞으로 멀티미디어(multimedia) 도서관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비도서관리정책이 이러한 현실적 발전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편목정책은 도서관관리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고에서는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많은 도서관이 비도서자료는 통합목록에서 제외시키며 그저 한 곳에 모아 놓거나, 심지어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서관의 비도서자료의 편목 연령이 길지 않으며, 이와같이 관심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국내에서도 비도서자료용 기술규칙이 제안된 것을 계기로 도서관에서 비도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편목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고는 비도서자료의 특수한 기술 영역인 으뜸정보원, 자료식별표시, 형태사항, 표목 등을 조사하고 주제명 표목, 매체유형의 구분,

분류 등 주제분석과 주제접근의 방법과 원칙을 조사하여 편목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규칙은 그동안 비도서자료용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된 AACR2R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또한 최근 “한국문헌자동화 목록 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KORMARC 기술규칙, 비도서자료용)”과 한국문헌자동화 목록 형식(안), 비도서자료용(KORMARC 포맷, 비도서자료용)이 제안되었고, 이어 공청회도 열렸는데, 본고는 KORMARC 기술규칙을 대상으로 AACR2R과 비교검토 하였으며 최종규칙 제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편목의 관리정책과 표준화

2.1 편목관리정책

비도서자료의 편목을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조직하여 레코드를 만들 것인가 일부는 제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교과과정에 직접 필요한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대신 자료의 주제에 따라 색채코드를 붙여 관리하며, 동물이란 주제에는 푸른색 코드를 사용하는 등 색채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배열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삽화 및 설명도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 자료 각각을 자체색인하여 주제표목별로 배열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대통령배 축구대회의 우승팀”에 관한 그림자료를

원하는 이용자는 주요 스포츠 군을 조사하고 축구라는 주제표목 아래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슬라이드 세트자료의 경우 각 슬라이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것인가 혹은, 전체를 하나로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편목관리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비도서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편목 관리정책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나 또는 자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배열되었나 하는 문제는 비도서자료의 경우 더욱 배려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비도서자료는 그 형태적 특성상 손쉽게 자료 내용을 훑어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목록의 접근성 제공비중이 도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폐가제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각 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기술수준이 필요한 것이며, 개가제를 사용한다면 이용자 스스로가 자료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지므로 상세한 기술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므로 도서관 시스템과 이용자 요구를 감안하여 기술의 수준(level of description)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관리정책 결정시에 통합목록을 고려해야 한다. 도서관 자료는 형태별로 보다는 주제별로 모든 해당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자료 보존기능보다 이용을 중시한다면 이러한 통합배열이 최상의 방법이며 이용도 증진시킨다(Weih, 1991, x). 비도서자료의 경우 일정한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음반, 슬라이드 세트, 필름은 통합배열에 별 문제가 없으나 차트, 표본, 모델 등을 같이 배열해야 할 때는 공간배치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모든 자료의 혼합배열은

건물공간과 인적자원 및 안전도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형태별 별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차선책으로 비도서자료와 도서자료 모두를 혼합한 통합목록을 구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각 매체별로 분할목록을 하게 되면 도서관 목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탐색할 시간이 충분한 이용자만이 비도서자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로 편목하고 기술편목규칙이나 주제명 표목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편목하는 것이 이용자 위주의 도서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Harrison(1973)은 통합 목록 구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정보의 홍수속에서 자료가 간과되거나 검색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목록은 점점 다루기 힘들어질 것이며, 목록을 적절히 보관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각 매체나 자료유형을 분명히 식별하기 위하여 표시를 계속적으로 추가 부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자료식별표시나 목록 이용안내로 해소시킬수 있는 기술적 문제이다. 이용자는 도서관 장서에 관한 완전한 레코드를 포함하는 목록 이용을 원한다. 즉, 특정 주제명으로 탐색하는 이용자는 목록에서 어떤 형태의 자료든 그 주제에 관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서정주의 시집"을 찾는 이용자는 도서관에 인쇄된 시집 뿐 아니라, 저자 자신이 시를 낭송한 음반 자료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음반 목록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프레드 쉬트에 관한 단행본과 컴퓨터 디스크가 같이 출판되는 것과 같이 최근에 이르러 한가지 자료가 도서와 비도서자

료로 동시에 출판되는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통합목록의 중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셋째, 컴퓨터를 최대한 이용하여 이용자 위주의 봉사를 행하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서지 봉사기관의 대규모 통합목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 아니라, 컴퓨터의 이용으로 비도서자료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서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목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나면 자료의 형태별 목록이 손쉽게 출력되며, 주제와 자료형태를 혼합한 탐색이 용이하게 된다. 예를 들어, Apple Macintosh의 하이퍼카드 소프트웨어의 각 카드나 화면을 통하여 많은 자료중 슬라이드 자료만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한 공과 대학에서는 통합목록을 구축하였으나, 동시에 강의실에서 비디오를 상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비디오 녹화자료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는 관리절정을 내렸다. 이는 이용자가 다양한 자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도서자료라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편목과 분류시스템을 전적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전산화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2 편목의 표준화

도서관은 여러 표준적 도구를 이용하여 비도서자료를 편목하거나 혹은 편목서비스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ataloging in Publication(CIP)이

나 Bibliofile을 이용하거나 여러 서지봉사기관, 또는 국립 도서관의 목록정보를 복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기관은 거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MARC 레코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도서관은 저장과 접근 및 표현이 표준화된 목록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MARC 포맷을 사용할 때 잇점으로 첫째는, 신용있는 목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도서관은 자관의 편목시에 MARC 포맷으로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CD-ROM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신속한 복제가 가능하게 된다. LC MARC 레코드 또는 국가 종합목록 MARC 레코드를 수록한 디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데이터베이스가 클수록 각관의 편목작업중에 목록을 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적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또는 비도서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마이크로 컴퓨터만 소유한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라도 MARC 편목을 이용하므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첨가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자관의 이용에 알맞게 출력할 수 있다. 표제, 저작자, 판사항, 형태사항 기술 등 목록데이터 요소는 동일하지만 데이터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마이크로 형태의 목록이나 온라인 목록과 같은 포맷을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목록과 책자형 목록 출력물을 필요에 따라 사

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목록의 포맷과 목록의 상세한 정도는 자관의 시스템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략형 온라인 목록에서는 형태사항과 주기사항의 기술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때 나타나지 않는 정보는 요청에 따라 완전한 레코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생략되는 기술요소 중 어떤 것은 비도서자료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으며 이들은 간략형 목록에도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들이다. 즉 자료식별표시, 자료식별표시만으로 적절히 표현되지 않을 경우는 특정 자료명 또는 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기기명 등이 자료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목록은 간략저록을 한줄로 나타내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간략형 목록 검색시 표제가 긴 경우는 자료식별표시까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자료의 효과적 이용에 필요한 요소들은 간략목록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한다.

3. 기술과 표목

3.1 복합매체자료와 세트자료의 처리

AACR2R의 규칙 1·1C4에 의하면 한 자료가 자료식별표시 리스트에 나타나는 두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도 주된 자료로 식별할 수 없다면 멀티미디어 또는 킷트로 표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AACR2R, 1988, 22). 영국쪽의 도서관은 자료식별표시중 제1리스트를 적용하며, 호주, 카

나다, 미국에서는 제2리스트를 적용하게되므로 같은 자료를 영국에서는 멀티미디어로 미국에서는 킷트로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암벽등반 [멀티미디어]

암벽등반 [킷트]

이와 같이 자료식별표시를 멀티미디어나, 킷트로 부여한 경우 형태사항에서 "사진 20장, 슬라이드 50장, 팜플렛 4권, 학습용 인쇄물 6개" 등과 같이 특정자료명과 수량을 자모순으로 기술한다.

복합매체로 구성된 자료에서 주된 자료가 식별되면 그 개체자료를 표목으로 삼으며 나머지는 딸린자료로 처리하거나 주기사항에 기입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제2리스트를 적용하므로 혼합매체자료를 킷트라고 표기해야 한다.

최근 멀티미디어란 용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영상의 통합적 기능을 두고 일컬어나(오해석, 1994, 15) 목록 규칙에서의 멀티미디어란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구성된 혼합매체 자료를 일컫는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도서관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장서로 지닌 도서관이란 의미로 쓰인다(Cabeceiras, 1991, xv).

많은 자료들이 세트로 간행되며, 이같은 경우 한 단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시리즈명을 부출시켜 관련성을 표시하면서 각각을 독립된 자료로 처리하기도 한다. 세트의 각 자료들이 이용자의 관심을 끈다면 별도의 저록을 제공할 가치가 있으며 세트자료 전체가 한 단위로써 중요성과 식별력을 지니게 되면 한 단위로

취급한다. 이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자료의 유형, 도서관 및 이용자 요구가 어떠한가에 좌우된다. 만일 한 세트안의 각 자료가 전혀 다른 분류번호와 주제명 표목으로 나누어진다면 그 세트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편목하는 것이 유익하다. 즉, “역사의 관찰”이란 총서명을 가진 자료로 각부분의 표제가 “십자군”, “장미전쟁”, “영국법률”인 경우, 이 총서의 각 표제들은 독립적으로 편목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세트안의 각 자료가 동일한 분류번호와 주제명 표목을 가진다면 해당 시리즈는 한 단위로 편목해도 무방하다. 총보(full score)와 파트보(parts score)로 구성된 악보세트나 연극용 대본세트 등이 대표적 예가 된다 (Waumsley, 1992, 154)

3.2 기술의 정보원

3.2.1 으뜸 정보원

비도서자료나 편목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중의 하나는 편목 대상자료의 기술 정보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Rogers, 1987, 3). AACR2R 제 1 장의 총칙과 각 장의 으뜸정보원에 대한 규칙이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서나 인쇄자료의 경우, 기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표제지나 판권지이지만 비도서자료에도 이것이 반드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 자료전체를 조사하므로 적절한 기술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슬라이드의 경우 표제 슬라이드, 인쇄물 해설서, 안내서, 보관용기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표제면의 가치는 도서만큼 절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ACR2R에서 비도서자료의 으뜸정보원은 첫째, 자료자체 혹은 자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기(예 : 카세트, 카트리지), 둘째, 상자 등 보관용기, 셋째, 자료와 같이 간행된 안내서나 매뉴얼 등 딸린자료, 넷째, 다른 참고정보원, 다섯째, 목록자 스스로가 제공하는 정보로 각 괄호에 넣어 기술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각 매체마다 정보원으로서의 우선순위가 다르며, 이에 관하여는 AACR2R 각 장의 앞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발췌하여 KORMARC 기술규칙, 비도서자료(안)과 비교한 것이 <표 1>과 같다. 디오라마, 게임, 모델, 실물자료, 장난감, 입체예술복제품, 녹음자료,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 입체자료 및 키트, 컴퓨터 파일 등은 으뜸정보원을 자료자체, 딸린자료, 보관용기 순으로 지시하고 있다. 또한 그래픽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지도는 자료자체, 보관용기, 딸린자료 순으로 보관용기를 인쇄물 딸린자료보다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다.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의 경우 보관용기보다 대본이나 홍보자료 등을 더 중시여기며(AACR2R, 1988, 183), 슬라이드는 매뉴얼이나 리플렛등 인쇄자료보다 보관상자 등 용기를 더 중요한 정보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ACR2R, 1988, 202). 키트 자료의 경우 각 구성자료 중 어느것도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때 보관용기 자체가 으뜸정보원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편목자가 자료전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용기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으뜸정보원이 너무 많아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대로 표제만 분명히 알 수 있는 모델자료의 경우 편목자가 자료를 판단하여 자료식별을 위한 기술내용을 “해양탐

사[모델]:[油井]"과 같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녹음 카세트 테이프의 기술 정보원은 카세트와 라벨이라고 되어 있으나(AACR2R, 1988, 162) 실제로는 카세트 테이프 자체와 용기 사이에 끼워 있는 카드에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으뜸정보원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

3.2.2 KORMARC 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의 검토

KORMARC 기술규칙은 녹음자료의 으뜸정보원을 레이블, 딸린자료, 보관용기로 주고 자료자체는 정보원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녹음 자료는 녹음 정보보다 인쇄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한다. 즉 디스크에 레이블과 녹음된 정보가 있는 경우, 레이블에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채기한다." (국립중앙도서관, 1996, 5)고 주기고 있다. 여기서 "녹음정보"란 녹음자료자체가 아니라 육성으로 녹음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AACR2R, 1988, 162) 구두 녹음된 서지정보 보다는 인쇄서지정보를 우선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녹음자료자체보다 레이블을 중요정보원으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본다. 녹음자료에서 녹음된 자료 자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정보원이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2번이 수록된 디스크에 레이블은 "협주곡 6번"으로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린 편목자는 녹음자료자체를 근거로 편목할 것이다. 따라서 녹음자료의 으뜸정보원은 자료자체, 레이블, 딸린

자료, 보관용기 순으로 수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픽 자료는 으뜸정보원으로 자료자체 혹은 레이블, 보관용기를 들고 있다(KORMARC, 1996, 5). 예술품 원본, 예술복제품, 차트, 사진, 기술도면, 필립스트립, 슬라이드 등 그래픽 자료는 특히 매뉴얼이나 리플렛 등 인쇄물 딸린 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블이나 보관용기 등에 자세히 나타낼 수 없는 유용한 서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쇄물 딸린 자료를 으뜸정보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체자료 및 키트는 자료자체만을 으뜸정보원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자료는 자료자체만으로는 표제명이나 형태사항만이 파악될 뿐이며 오히려 딸린자료와 보관용기에서 풍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키트자료는 전체보관용기에서 주된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체자료 및 키트의 경우 딸린자료와 보관용기를 으뜸정보원으로 첨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형태 자료의 으뜸정보원은 AACR2R에서는 자료자체, 보관용기, 딸린자료 순이나 KORMARC(안)은 딸린자료에 보관용기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사본자료와 악보는 자료식별표시에 명기되었으나 으뜸정보원에 대한 KORMARC 규칙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음악 전문도서관, 예술자료관, 및 음악대학이 있는 대학도서관 등에서 악보자료는 매우 중요한 장서이므로 으뜸정보원에 대한 기술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표 1〉 기술정보원의 비교

자료유형	AACR2R, 1988	KORMARC 기술규칙(안), 1996
녹음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 딸린자료 · 보관용기(상자 등)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블 · 딸린자료 · 보관용기 / 녹음자료는 녹음정보보다 인쇄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한다. 즉 디스크에 레이블과 녹음된 정보가 있는 경우 레이블에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채기한다.
그래픽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레이블 · 자료일부인 용기 · 보관용기(상자, 프레임) · 인쇄물 딸린자료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혹은 레이블 · 보관용기
마이크로 형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 마이크로 필름은 표제 프레임 아파취 카드는 표제카드나 카드 자체 마이크로 팻쉬와 마이크로 오펜크는 표제 프레임 · 자료의 나머지 부분, 자료일부인 용기 · 보관용기 · 인쇄물 딸린자료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틀 프레임 또는 타이틀 카드 · 자료자체 · 딸린자료 · 보관용기
사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표제면, 간기, 표제, 사본의 내용) · 자료의 다른 사본 복본 · 자료의 간행된 판 · 참고 정보원 · 기타 정보원 	없음
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면 · 캡션 · 표지 · 간지 · 서문 · 기타 정보원 	없음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레이블 · 자료일부인 용기, 레이블 · 딸린자료(대본, 홍보자료 등) · 별도 보관용기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틀 프레임 · 레이블 · 딸린 자료 · 보관용기
입체자료 및 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레이블 · 인쇄물 딸린자료 · 보관용기 	· 자료자체
지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 보관용기나 상자, 구체의 받침대 · 딸린 인쇄자료(팝플랫 등)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자체 · 보관용기(봉투, 상자), 구체의 받침대
컴퓨터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 스크린 · 주메뉴, 프로그램 내부정보 · 레이블, 물리적 부착물 · 출판자나 제작자가 간행한 정보 (다큐멘테이션) · 보관용기에 부착된 인쇄정보 · 해당 파일에 관하여 간행된 자료 · 기타 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제가 수록된 스크린 · 내부사항(주메뉴, 프로그램 명령문) · 자료자체 또는 레이블) · 파일발행자나 제작자에 의해 발행된 정보 · 보관용기에 기재된 정보

3.3 자료유형의 식별방법

자료유형의 식별방법에는 자료식별표시, 색채코딩, 매체 코드부여 등의 방법이 있으며, 또한 형태사항의 특정자료명에 밑줄을 긋거나 특정자료명을 대문자로 표기하여 식별하는 방법이 있다(Frost, 1989, 6).

3.3.1 자료식별표시

편목대상이 되는 자료의 물리적 형태를 식별하는 것을 자료의 식별이라 하며, 비디오 녹화자료, 녹음자료와 같이 일반적인 자료식별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와 비디오 카세트, 비디오 디스크, 녹음 카세트 테이프, 녹음 테이프 릴 등과 같이 특정 자료표시(specific material designation)로 나눌 수 있다.

자료식별표시의 기능은 첫째, 편목대상이 되는 자료의 특성이나 유형을 표현하여 이용자에게 자료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매체의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셋째, 동일표제를 가진 자료의 다양한 물리적 형태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자료식별표시는 이용자에게 자료의 형태에 관하여 빠르게 알려주는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용어가 분명하여 이용자가 자료의 형태를 신속히 식별하는 것이 자료식별표시의 최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식별표시는 본서명 다음에 각괄호에 넣어 표기하여 자료의 형태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도록 레코드의 앞부분에 이를 나타낸다. 자료유형에 흥미있는 이용자는 형태사항과 주

기사항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자료형태정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AACR2R은 자료식별표시를 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미 간에 용어 통일을 이루지 못하여 쌍방이 각각 다른 자료식별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영국 측은 그래픽이란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미국측은 예술품 원본, 차트, 필름스트립, 플레시 카드, 그림, 슬라이드, 기술도면, 트랜스페어런스와 같이 세분하여 사용하며 영국은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에 지도와 지구의의를 포함시키고 미국측은 지도와 지구의의를 별도 명칭으로 제시한다.

다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리스트는 복합 자료를 멀티미디어 제2리스트는 킷으로 부르며, 게임, 장난감 등은 제1리스트에서 모두 실물자료(object)에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신속한 식별력이 자료식별표시의 최상의 기능이라고 볼 때 그래픽 자료나 실물자료(object) 등은 포괄성이 큰 용어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제2리스트의 어떤 매체 표시에도 시각장애자용 자료라는 표시로“(큰 활자인쇄자료)”, “(감촉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점자자료의 인쇄자료 이외의 모든 제2리스트 매체에 “(점자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도(감촉자료)]”, “[악보(점자자료)]” 등과 같이 표기한다.

어학 킷과 여러개의 텍스트로 구성된 활용카드세트는 킷, 전산기는 실물자료, 전자장난감은 장난감으로 표시하며, 건축 표현물은 자료자체가 원본인가 복제품인가에 따라

〈표 2〉 자료식별 표시의 비교

AACR2R, 제1리스트	AACR2R, 제2리스트	KORMARC, 기술규칙(안)의 리스트
그래픽 자료(graphic)	게임(game) 그림(picture) 기술도면(technical drawing)	게임(game) 그래픽(graphic) 그림(picture)
녹음자료(sound recording)	녹음자료(sound recording) 디오라마(diorama) 마이크로 스코우프 슬라이드 (microscope slide)	기술도면(technical drawing) 녹음자료(sound recording) 마이크로 형태자료 (microform)
마이크로 형태자료(microform)	마이크로 형태자료(microform) 모형(model)	모형(model)
비디오 녹화자료 (video recording)	비디오 녹화자료 (videorecording)	복제물(art reproduction) 복합자료(multimedia)
사본(manuscript)	사본(manuscript) 슬라이드(slide)	비디오 녹화자료(video recording)
실물자료(object)	실물자료(realia)	사본(manuscript)
악보(music)	악보(music)	사진(photograph)
영화(motion picture)	영화(motion picture) 예술품 복제물 (art reproduction) 예술품 원본(art original) 장난감(toy)	슬라이드(slide) 실물모형(realia) 실물모형(object) 음악자료(music) 영화(motion picture)
점자자료(braille)	점자자료(braille)	미술자료(art original)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	지구의(globe) 지도자료(map)	장난감(toy) 점자자료(braille)
컴퓨터파일(computer file)	컴퓨터파일(computer file)	구체자료(globe)
멀티미디어(multimedia)	키트(kit)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
텍스트(text)	텍스트(text)	차트(chart)
	트렌스페어런시(transparency)	컴퓨터파일(computer file)
	필름스트립(filmstrip)	클리핑 자료(clipping)
	플레시카드(flash card)	키트(kit)
	차트(chart)	투시화(diorama)
		판자료(board)
		플레시 카드(flash card)
		필름스트립(filmstrip)

예술품 원본과 예술 복제물로, 건축청사진은 기술도면으로 표기한다. 또한 놀이를 통한 오락이나 교육을 위해 설계된 자료의 경우 게임 자료는 일반적으로 규칙이 먼저 기술되어지며, 장난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대략 구별할 수 있다. 놀이용 인형은 장난감으로,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그 목적에 따라 예술복제품 또는 모델로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국의 민속의상을 입고 있는 기계제작된 인형은 모델로 표시한다.

AACR2R은 자료식별표시를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편목에 적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각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자료식별표시를 목록레코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매체의 목록에 대하여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며, 기존의 용어 정의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에는 자료식별표시명의 부여가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자료의 형태적 포맷을 알기 위하여는 레코드의 형태기술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온라인 간략 목록이나 COM 목록에 대한 색인과 같은 생략형 목록에서는 포맷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다. 자료식별표시를 목록레코드에서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자료의 포맷에 관한 조기경보신호로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주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으나, 용어집에 이용어들이 모두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 간에 완전한 공감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간략형 레코드 목록이나 COM 목록을 사용하거나, COM 목록에 대한 색인을 가진 도서관 또는 이용자가 목록 레코드에서 빠른 자료식별 정

보를 원하는 도서관에서는 자료식별표시를 모든 자료에 적용해야 한다. 자료식별표시를 기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AACR2R의 13개의 표시명을 가진 제1리스트나 27개의 표시명을 가진 제2리스트 혹은 ISBD의 리스트를 선택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AACR2R의 제2리스트를 많이 참조하고 있다.

3.3.2 색채코딩

자료의 유형에 따라 색채처리된 목록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며, 슬라이드 자료는 푸른색 카드, 음반은 초록색 카드 등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Weih(1976)는 색채코딩이 자료식별표시 방법으로 타당치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목록 데이터의 사진 복사시 컬러필름 사용은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실용적이지 않으며, 컴퓨터로 간행한 도서관 마이크로 형태자료, 온라인 목록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비실용적이다. 또한 국제적 색채코드 기준이 존재치 않으며 각관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색채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새로운 매체의 유입으로 색채적용이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색도가 일관성있게 유지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온다. 색채코딩으로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매체 접근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목록의 형태가 카드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경향에 따라 이 방법의 사용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목록에서 색채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3.3 매체코드

목록카드의 오른쪽 위에 매체코드명을 기입하여 청구번호의 한부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유형의 청구기호는 자료를 매체코드별로 배열하게 되며 매체별로 분산배가된 많은 자료가 다양한 크기를 가지므로 공간을 비경제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Furlon과 Platt(1976)는 F(필름), FL(필름 루프), FS(필름 스트립), K(킷트자료), MA(지도), MO(모델), MF(마이크로 형태자료), MS(마이크로 스코우프 슬라이드), P(그림), R(음반), S(슬라이드), SP(표본자료), TC(카세트 테이프), TR(릴 테이프), W(단어 카드), WA(벽 제도)와 같이 16가지의 매체코드를 제시하였다. 매체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하므로 매번 사서의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thergill, 1990, 233). 사실 일반 이용자가 매체코드와 분류번호를 동시에 기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매체코드는 일반적으로 자료식별 표시만큼 매체의 식별력이 뚜렷하지 못하며, 매체코드가 자료의 저장이나 식별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아니므로 청구번호의 일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할 만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온라인 목록은 간략형 목록을 한 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긴 표제의 경우는 자료식별표시까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간략형 목록에 매체코드를 부여하면 자료유형의 식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3.4 KORMARC 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의 검토

자료식별표시의 종류. <표 2>의 그래픽,

실물모형(object), 클리핑 자료, 판자료, 복합자료(multimedia)등은 다른 자료와 중복되거나 목록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즉 그래픽은 그림, 기술도면, 슬라이드, 미술자료, 지도자료, 차트, 플레시 카드 등 특정 그래픽 자료가 각각 열거되고 있는데 구태여 그래픽이라는 우산개념의 용어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실물모형(object)은 실물모형(realia)을 주고 있으므로 중복이 되며, 복합자료(multimedia) 또한 키트(kit)와 같은 의미이므로 중복 열거가 되었으며, 클리핑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색인어 참조 안내만 행하며 정식으로 목록하는 경우도 별로 없으므로 자료식별 표시에 명칭이 수록될 정도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OHP자료인 트랜스 페어런시는 최근 어디서나 보편화된 자료이므로 식별표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문제와 용어집. 기술규칙에서 “music”은 악보를 의미하므로 표 2에서와 같이 음악자료(music)라 칭한 것은 악보(music)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투시화(diorama)는 슬라이드, 트랜스페어런시 등 다른 투시자료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디오라마(diorama)로 표기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미술자료(art original)는 예술품원본으로, 복제물(art reproduction)은 예술품 복제로 그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이크로형태자료, 비디오 녹화자료, 구체자료, 지도자료등과 같이 매체명에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와 영화, 게임, 기술도면 등과 같이 첨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매체명만으로도 대부분 식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혹 “~자료”를 붙이고자 한다면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비도서자료의 경우 많은 용어들의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들이 유입되기도 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며, 그 범위등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최근에 개발된 매체만 하여도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미니디스크,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등을 들 수 있다. AACR2R의 경우도 플립차트, 사진, 포스트 카드, 포스터, 입체화, 학습용인쇄물, 벽해도 등은 규칙 뒷부분에 첨가된 용어설명(glossary)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와같이 용어집이 있으므로 많은 경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하물며 비도서자료를 다루고 목록하는 연령이 어린 국내의 각 도서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용어집 첨가는 매우 필요하다.

적용의 일관성. 기술규칙을 적용한 실예의 제시에서 자료식별표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용어들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즉, “[visiual projection]”(KORMARC, 1996, 27), “캐롤성가[음반]”(KORMARC, 1996, 31)에서 사용한 “visual projection”이나 “음반”이란 용어는 자료식별표시명이 아니므로, 각각 “slide”, “녹음자료”와 같이 범주에 맞는 표시명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료식별표시의 위치는 본표제 바로 다음으로 “본표제[자료식별표시] : 부표제 = 대등표제 : 대등표제의 부표제”(KORMARC, 1996, 22)와 같다는 규칙에 의

거하여 볼 때,

“테너 박세원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

캐롤성가 [음반]”(KORMARC, 31),

“姓氏의 고향 : 金海 金氏 [비디오 녹화자료]”

(KORMARC, 31)는

“테너 박세원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녹음자료] :

캐롤성가”

“姓氏의 고향 [비디오 녹화자료] : 金海 金氏”로

자료식별표시의 위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규칙적용의 일관성은 기술규칙 전체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3.4 형태사항의 기술

3.4.1 특정자료표시

형태사항에는 자료의 범위와 특정자료표시, 형태적 세부사항, 크기 및 딸린 자료의 기술이 포함된다. 형태사항의 기술을 위하여 목록자는 여러 가지 기술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며 목록이용자를 위하여도 목록 이용안내에 이와 같은 설명이 포함되거나 또는 목록을 검색하는 장소 근처에 목록기술용어 안내 등을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반의 경우를 살펴보면 LP레코드에서 CD 오디오로 발전했다가 여기서 CD-ROM 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CD-I, CD-G, CD-V 등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편목시 LP나 CD 오디오는 녹음자료이지만 CD-ROM은 컴퓨터 파일이

며, CD-G, CD-V 등은 비디오 녹화자료로 표시된다. 또한 1970년대에 출현한 비디오 디스크는 1980년대 초에 레이저 디스크로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로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비디오 녹화자료이다. 기술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어떤 유형으로 취급할 것인가 당혹해 할 수 있으나 기술규칙의 자료식별표시, 형태사항의 특정자료 표시에 나타나는 매체의 범주를 검토하여 적용시키고 주기사항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식별력을 부여할 수 있다. 비디오 디스크에서 개발된 레이저 디스크의 경우 자료식별 표시에 “[비디오 녹화자료]”로 표기하며, 형태사항에는 “비디오 디스크 1장(80분) : 유성, 천연색 : 30 cm.”로 주기사항에는 “Laser optical CAV”와 같이 사용할 시스템 명을 주어 매체 유형을 분명히 나타낸다. CD-ROM 자료의 경우는 자료식별 표시에는 “[컴퓨터 파일]”로, 형태사항의 특정자료 표시에는 “컴퓨터 디스크 1장”과 같이 기술하며 주기사항에 “CD-ROM”이라는 것을 표기할 수 있다. 컴퓨터 파일, 녹음 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비디오 녹화자료 등은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어도 각각 컴퓨터, 녹음, 마이크로 라는 한정어를 사용하여 새로 개발될 매체명을 특정자료표시명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특정자료표시를 할 경우, 규칙에 “컴퓨터 디스크”와 같이 매체명이 나타나 있다면 그대로 표기하거나, 규칙에 나와있는 매체에 특별한 성격이 추가된 경우 예를 들어, “컴퓨터 오티컬 디스크”와 같이 추가하여 기술한다. 자료식별표시나 형태사항의 특정자료표시를 할 경

우에는 되도록 규칙에 나와있는 기본적 자료 표시형태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형태사항의 특정자료표시를 기술할 때 “CD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플러피 디스크” 등과 같이 자료명을 직접 주지 않고 “녹음 디스크, 녹음 카세트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와 같이 기술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유형에 맞추어 기재함에 유의해야 한다.

3.4.2 크기

필름스트립과 필름슬립, 입체화 이외의 모든 그래픽 자료는 자료의 길이와 폭을 세로×가로cm로 나타낸다(AACR2R, 1988, 212). 그러나 포스터나 벽케도의 경우 자료가 원래 크기로 보관되지 않고 접은 상태나 둥글게 말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크기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 녹음 자료나 컴퓨터 파일의 디스크, 카세트, 카트리지는 등은 직경이나 세로의 길이와 자료의 폭, 테이프의 폭 등을 인치(inch)단위로 표기한다. 또한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 중 비디오 릴, 비디오 디스크는 테이프의 폭과 디스크의 직경을 인치로 나타낸다. 그러나 그래픽, 마이크로 형태자료, 지도 등은 세로×가로cm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래픽, 입체 자료들이 세로×가로cm, 세로×가로×깊이cm로 그 크기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으나, 카세트와 카트리지의 경우 가로×세로cm로 크기를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ACR2R의 크기 기술시 많은 경우 인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도서관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편목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3.4.3 딸린자료

주된 자료에 첨가된 부차적인 자료를 기술하기 위하여 딸린자료 영역을 사용한다. 딸린 자료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은 독립된 저록이나 분출로 기술하거나, 주기사항 또는 형태사항의 끝부분에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자판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각 도서관의 정책에서 결정해야만 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형태사항의 말미에 “+ 팜플렛 1권” 과 같이 세부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목 대상 자료에 주체적 부분이 없으면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형태 세부사항에 자세한 설명없이 각 매체의 범위나 수량만을 기술하며, 보관용기가 있는 경우는 맨 끝에 크기를 기재한다. 자료의 형태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학습용 키트자료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예는 다음과 같다. :

교사용 핸드북, 플레시 카드 30장, 학습용 카드 10장 : 16×30×20cm 상자

둘째, 자료가용에 필요한 기기 등을 사전 준비 해야 되는 경우는 자세한 형태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각 자료별로 형태사항을 다음 예와 같이 다른 줄에 별도 기술한다. :

녹음 카세트 테이프(38분) : 아나로그, 모노

필름 스트립(39프레임) : 천연색 : 35mm.

학습용 인쇄물 4장 : 천연색 : 29×44cm.

셋째, 한 자료가 여러 가지 매체와 많은 부

분으로 구성되었을 때, 일반적인 용어로 형태사항을 아래 예와 같이 기술한다.

42 부분 : 22×12×6cm 상자

3.4.4 KORMARC 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의 검토

사본과 악보에 관한 형태사항의 기술규칙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악보형태의 표시등이 제시되지 않아 기술시 편목자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디스크 1매, 비디오 디스크 1매, 필름릴 1권, 필름릴 1매, 사운드 디스크 1매, 마이크로 피쉬 5매, 슬라이드 1매, 지구의 1기, 구역도 1매, 실물모형 2기, 사진 30매 등과 같이 KORMARC에서 사용하는 매, 권, 기 등과 같은 단위명칭에 대하여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형태세목의 기술시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는 “유성”, 컴퓨터 파일의 경우는 “음향”으로 음향 여부의 표기 용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공통용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자료의 크기의 기술에 AACR2R과 마찬가지로 KORMARC도 많은 경우 인치(inch)를 사용하고 있다. 인치는 서양의 길이측정을 위한 단위 개념이며,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위이다. 혹 편목 업무에 익숙한 사서들은 인치로도 크기에 대한 식별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국내의 일반이용자의 목록이용을 염두에 둘 때 구태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단위를 한국의 목록규칙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식별력과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조명희, 1994, 154).

3.5 표목의 기술

3.5.1 기본표목

일단 기술사항이 결정되면 편목자는 기술요소에서 표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로 앞의 <표 1> 기술정보원에 나타난 정보를 기본으로 표목을 결정하며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과 같이 자료의 내용에 나타나는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술정보원의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충분치 못할 때는 자료의 외부에 나타나는 정보를 이용하여 표목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비도서자료의 경우 특히 표목의 결정에 유의해야 하며 몇몇 예는 다음과 같다: 그래픽자료를 다른 자료로 각색한 경우는 각색 책임자를 표목으로 선택하며, 각색자명이 분명치 않다면 표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나 원본자료의 작가명과 표제명은 부출한다. 회화, 판화, 사진, 드로잉, 조각 등 예술작품의 복제물은 원본자료의 표목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플라스틱 복제물 자료의 기본표목은 “미켈란젤로”가 된다. 복제자명이나 복제의 책임소재는 부출표목을 표시한다. 한 작곡가의 작품을 편곡한 것은 원 작곡자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며 작곡자명 미상이라면 원표제명이 표목이 되고 편곡자명은 부출한다. 원곡의 테마만을 사용한 변주곡 등의 개작 작품은 개작자명을 표목으로 하며, 관련 음악 등은 작곡자명-표제명으로 부출한다. 음악

이나 낭독을 수록한 녹음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전음악은 작곡자명이, 대중음악은 표제명이, 낭독은 그 작품의 저자명이 각각 표목이 되며 가수나 낭독자, 오케스트라명 등 주요 연주자명은 부출한다.

그러나 비도서자료에는 적당한 저자사항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자료의 표제하에 기본저록을 작성하게 될 때가 많다. 음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표목을 가지나 필름스trip이나 슬라이드, 차트 및 포스터는 때때로 저자 표목을 가진다. 모델 자료와 영화는 거의 저자명이 아닌 표제명으로 기본 저록을 하게 된다. 비도서자료의 편목시 저자명 기본 표목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도서자료의 이용 경향을 주시하여 본 여러 경험있는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제명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경향을 보이며 저자명으로 비도서자료를 탐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을 발견하였다(Fothergill, 1990, 242).

3.5.2 부출표목

부출표목은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것 이외에 다른 인명이나 표제명으로 특정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목록에서 부출표목은 기본표목과 대등한 기능을 하는 접근점이 된다. 부출표목을 이용하여 지휘자명이나 감독명과 같이 특정한 목적의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필요한 부출저록의 수와 종류는 각 도서관에서 목록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비도서자료의 부출표목에 관한 정책의 결정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부출정책은 도서와 비도서자료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며, 둘째, 정책에서 기술의 수준(level of description)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켜나간다. 제 3 기술 수준으로 결정하면 제1 기술수준 보다 더 많은 부출표목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목록레코드에 기록된 인명, 표제, 총서명 만이 부출되어야 한다. 부출 저록은 이용자가 자료를 탐색하리라고 예측되는 특정 표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역할이나 그룹의 역할에 대해 식별하며, 특정 정보검색에 필요하다면 표준리스트에서 정한 식별 표시를 "정명훈, 지휘자"와 같이 인명이나 단체명에 첨가시킬 수 있다.

4. 주제분석과 주제의 기술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선택한 주제분석은 도서와 비도서자료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도서자료 이용자는 탐색시에 주제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도서와 마찬가지로 비도서자료의 주제기술을 위하여는 주제내용을 분석하고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어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료의 주제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를 위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는 과정은 도서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자료의 형태상 브라우징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가 많다는 점과 각관의 형편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주제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4.1 주제명 표목

주제명 표목 시스템은 포괄성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제명 표목은 각 도서관의 장서나 규모에 알맞게 선택해야 할 것이며, 주로 대학도서관, 연구전문 도서관 등에서는 LC Subject Headings(LCSH)를, 작은 규모에서는 Sears Subject Heading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의학장서용으로는 MeSH를 들 수 있다. 현재는 작은 규모이지만 확장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은 처음부터 LCSH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CSH는 현재 매년 개정판이 발행되며 아동용 자료를 위해서 Subject Headings for Children's Literature가 별도 간행되고 매주 최신표목 정보를 제공하는 Subject Headings Weekly Lists가 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61년 「이재철 주제명 표목표」가 간행된 이후 통합적 주제명표목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외국자료에만 LCSH의 주제를 부여하고 국내자료에는 주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자료의 주제접근용으로는 분류목록을 별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의 주제명표목표가 없으므로 이러한 차선택을 선택했겠으나 바람직한 것은 한국의 주제명표목표가 개발되어 도서나 비도서자료, 외국자료나 국내자료 등 모든 자료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명표목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 기존의 주제명표목이 도서자료 위주로만 개발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뉴미디어를 포함한 비도서자료의 각 매체에 대한 특성과 접근점이 충분히 반영된 통합적 주제명리스트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포괄적인 주제명표목표가 개발되면 규모가 작은 도서관용 간략형 주제명표목표의 간행도 아울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67년 간행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주제명표목표, 국민학교용」과 「주제명표목표, 중등학교용」의 수정개정을 통한 적극적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2 매체유형의 구분

비도서자료 이용자에게 매체 종류의 식별은 실제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주제명 표목 접근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매체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앞서 표 2의 자료식별 표시에서 사용되는 매체명이 주로 쓰인다.

관내의 등산에 관한 모든 비디오 녹화자료를 원하는 식으로 특정주제의 특정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탐색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합목록에서는 각 카드의 자료식별표시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요구는 그리 빈번한 것은 아니므로 각 자료의 유형별 표목을 별도 제공하는 정책을 고수하기 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요구가 빈번하다면 자료유형별 선정목록을 비치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자료유형을 첨가하여 정확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디오 녹

화된 춘향전”, 또는 “춘향전 공연을 수록한 녹음자료” 등과 같이 자료식별표시로 탐색범위를 좁혀 탐색할 수 있다. 실제로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파일의 주제접근의 지침서에서는 자료형태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제명을 기본표목으로, 자료형태를 부표목으로 하는 하위표목으로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예 : “염색-영화”, “비즈니스-데이터베이스”) (ALA, 1987 : ALA, 1986)

4.3 분류번호

분류체계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규모나 유형이 비슷한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장서의 규모와 분류시 요구되는 특수성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국내의 연구전문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DDC를, 공공도서관은 KDC, 특수도서관은 주제분류체계인 NLM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분류번호를 부여할 때 어느 정도 자세한 수준까지 세분을 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하여야 한다. DDC를 사용할 때 장서나 도서관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DDC 완전판보다 간략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일 대규모 시스템과 연합할 가능성 등이 있을 때에는 처음부터 완전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장서를 지향하여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관방법과 훈련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장소나 인적자원, 시간 등의 불충분한 조건으로 인하여 분류나 서가배열에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자료를 접근번호에 따라 조

직할 수도 있다. 접근번호를 선택할 때는 이 번호와 주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동일주제에 대한 자료라도 함께 배열되지 않으며, 주제접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록을 통하는 것이고, 청구기호가 각 도서관 단위로 부여되므로 중앙집중화된 서비스의 이용이나 편목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호환성을 잃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4 주제분석의 제 문제

비도서자료의 주제분석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Weihs, 1989, 9) :

첫째, 주제표목의 정확성 문제로서 어떤 비도서자료는 브라우징이 용이하지 않거나 매체의 주제 내용이 매우 특이하여 주제표시를 자세히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즉 LCSH 등 표준적 주제명 표목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자료의 주제내용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대부분의 비도서자료는 색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료 발행자가 메뉴얼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자료를 브라우징 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둘째, 주제분석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서로 출판하기 앞서 녹음 테잎에 수록하거나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하는 등 새로운 주제가 비도서 포맷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주제명 표목과 분류 시스템을 최신성 있게 유지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셋째, 대부분의 주제명 표목과 하위 표목은 도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분류체계와 주제명 표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도서용으로 구축된 것이며, 따라서 도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주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공공·대학·학교도서관에서 음반이나 녹음 테이프 등 녹음 자료의 주제분석시, 일반 이용자에게는 주제명 표목시스템의 표목이 지나치게 어렵고 학술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1980년대에 미의회도서관은 음악 편목 담당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재즈와 대중음악의 표목을 대폭 수용하여 확장시켰다.

다섯째, 영화와 비디오 녹화자료의 이용시 이용자는 주제 이외의 다양한 접근점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자료는 영화의 풍조나 기법 및 장르별 표목과 동화상 자료나 실험용 필름을 위한 분류체계를 필요로 한다.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용어의 변화로 야기되는 요구를 모두 인식하여 주제분석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편목 담당자는 표준 표목에 나타나지 않는 주제명 표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여러가지 편목 정보원을 찾아보고 Dialog, BRS, Medline 등 온라인 서비스로 최신표목을 탐색해 보거나 도서관의 목록을 조사해 본다. 동시에 관련 주제 표목을 수록하고 있는 표준적 주제명 표목표의 최근판이나 보유판에서 유사한 표목들을 검토해 보거나 자료자체로부터 적절한 주제용어를 입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주의깊게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5. 결 론

편목에 앞서 도서관은 모든 자료에 적용할 기술편목과 부출표목의 범위와 상세도, 분류체계와 분류의 상세도, 저자기호 등 번호시스템 및 주제명 표목시스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에서 이들을 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비도서자료의 기술편목시 주의가 필요한 특수한 영역들을 조사하여 편목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제안된 KORMARC 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을 검토하여 최종규칙제정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에 근간이 되어야 할 요소로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 통합적 목록의 제공, 컴퓨터를 이용한 최대한의 이용자봉사를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편목시 표준적 도구와 표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세트자료 및 복합매체를 일컫는 멀티미디어와 키트자료의 편목기술시 처리원칙과 기술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도서자료의 기술을 위한 으뜸정보원은 대부분 자료자체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레이블이나 자료의 일부인 용기, 보관용기, 인쇄물 딸린자료, 기타정보원 및 편목자가 제공하는 정보순위로 채기한다. 그러나 각 매체마다 그 특성상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KORMARC의 으뜸정보원의 기술시 녹음자료는 자료자체가 우선순위로 삽입되고 그래픽 자료는 인쇄물 딸린자료를, 입체자료 및 키트

는 딸린자료와 보관용기를 기술정보원으로 첨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본과 악보의 으뜸정보원이 기술규칙에 첨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자료유형의 식별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자료식별표시는 국내에서 대부분 AACR2R의 제2 리스트 27가지를 표시명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1 리스트와 비교하고 적용예를 제시하였다. KORMARC의 경우는 자료유형의 식별표시에 중복되는 개념의 용어와 식별이 명확치 않은 용어, 용어의 일관성 있는 사용문제, 포함되어야 할 매체명 등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집의 첨가를 필요로 한다.

다섯째, 형태사항의 특정자료표시와 수량의 기술시 개체자료명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자료의 기본매체명을 사용하며, 새로운 매체명이 등장하면 편목자 메뉴얼에 명기하여 참고한다. KORMARC의 경우는 사본과 악보에 대한 형태사항 기술규칙이 다뤄지지 않아 편목자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매체의 공통적인 기본명칭을 사용하는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수량과 단위명칭의 기술시 권, 기, 매 등의 용어보다 보편성 있는 단위명칭의 사용이 필요하다. 자료 형태세목의 기술시 음향상태를 나타낼 때 “음향” 보다는 의미가 분명한 “유성”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크기의 기술시 국내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치보다는 센티미터를 단위로 도입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비도서자료의 표목선정과 기술시 유의할 점과 정책결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비도서자료의 주제접근을 위한 주제명 표목, 분류체계, 표목에서 자료유형의 표현방법 등을 조사하고 정책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비도서자료는 자료의 형태적 특성상 브라우징이 어렵고 색인도 거의 포함치 않으므로 검색시 목록을 통한 주제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비도서자료 기술규칙의 표준화와 적절한 주제명 표목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비도서자료용 KORMARC 기술규칙과 포맷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주제명 표목표가 국내에서도 개발되면 각 매체의 기술편목과 주제분석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도서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주제적인 편목정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1996.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안):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_____. 1996.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비도서자료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_____. 1993.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오해석. 1994. 멀티미디어. 서울: 이한출판사

조명희. 1994. "컴퓨터파일자료의 조직". 한국정보관리학회 전국논문대회. 제1 회 논문집.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p. 151-154.

_____. 1996. "컴퓨터파일의 주제접근에 관한 연구." 도서관 51 (3): 56-70

한국도서관협회. 1990. 한국목록규칙. 3. 1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8.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 Chicago:ALA

Cabeceiras, James. 1991. The Multimedia Library. 3rd ed. San Diego: Academia Press.

Dodd, Sue A. 1982. Cataloging Machine-Readable Data Fil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llison. J. W. and Coty, P. A. 1986. Non-book Media.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othergill, Richard. 1990.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3rd ed. London: Clive Bingley.

Frost, Carolyn O. 1989. Media Access and Organization. Englewood, Col.: Libraries Unlimited.

Furlong, N. and Platt, 1976. Cataloging Rules for Books and Other Media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5th ed. School Library Association.

Harrison, H. P. 1973. "Media Resources in the Open University Library" Audiovisual Librarian 1(1) :13-14.

Inter, Sheila and Studwell. 1992. Subject Access to Films and Videos. Lake Crystall, Minn.:Soldier Creek Press.

Olson, Nancy B. 1991. Cataloging Motion

Pictures and Video Recording. Lake
Crystall, Minn.:Soldier Creek Press.

Rogers, JoAnn V and Saye, Jerry D. 1987.
Nonprint Cataloging for Multimedia
Collections. 2nd ed.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Waumsley, Stuart. 1992. "Sets". in Non-
Standard Collection Management. ed.
by Michael Pearce. (Aldershot:
Asgate): 154-179

Weihs, J. R. 1989. Non-book Materials. 3rd
ed.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_____. 1991. The Intergrated Library. 2nd
ed. Phoenix, Ari.: the Oryx Press.